

## 직원채용 시험가산점수(제5조 제2항 관련)

구 분	세 분	가산점수 및 부가점수	비 고	
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	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해당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해당자 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해당자	과목별 만점의 10%	·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산  ·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	
	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해당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해당자 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해당자	과목별 만점의 5%	·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·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	
자격증 보유자	공 통 (사무 및 통신·정보)	정보관리기술사,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	1.0%	·전산직 제외
		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워드프로세서 1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	0.5%	
	행정분야	변호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변리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, 관세사, 사회복지사 1급, 공인노무사, 직업상담사 1급, 사회조사분석사 1급, 임상심리사 1급	5.0%	·필기시험 시에만 가산  ·채용 관련분야 자격증에 한함
		물류관리사, 사회복지사 2급, 직업상담사 2급, 사회조사분석사 2급, 임상심리사 2급	4.0%	
		사회복지사 3급	3.0%	
	기술분야 (국가기술자격법령 에 의한 해당분야 인정 자격)	기술사, 기능장	5.0%	·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필기시험의 각 과목 별 득점에 각 과목 별 만점의 일정비율 가산
		기사, 산업기사	4.0%	
		기능사	3.0%	